

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엄셋별 의원 대표발의]

의안번호	2730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5. 5. 29.

발 의 자 : 엄셋별 의원

이인식 의원

1. 제안이유

관내 합창단 현황에 따른 규정 정비 및 소년소녀합창단 설치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및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자긍심 고취와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합창단 관련 세부 정비 및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신설(안 제2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2)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 및 제39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1) 신 · 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
2) 입법예고: 2025. 5. 30. ~ 2025. 6. 5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합창단”을 “여성합창단, 시니어합창단, 소년소녀합창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종류 및 구성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(이하 “예술단체”라 한다)에는 <u>합창단</u> , 청소년오케스트라, 국악단, 극단 등(이하 “각 예술단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 ② · ③ (생 략)	제2조(종류 및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여성합창단</u> , <u>시니어합창단</u> , <u>소년소녀합창단</u> -----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현행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

[시행 2022. 01. 13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23호, 2021. 12.31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제39조와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금천구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공연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2021.12.31.>

제2조(종류 및 구성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(이하 “예술단체” 라 한다)에는 합창단, 청소년오케스트라, 국악단, 극단 등(이하 “각 예술단” 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② 각 예술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지휘자, 연출자, 반주자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(이하 “단원” 이라 한다)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(객원)을 둘 수 있다.

③ 각 예술단의 단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이 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덕망있는 인사로 위촉하거나 금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

제3조(단장 및 단원의 직무) ① 단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소속 단원을 통솔하며, 예술단체 간의 업무 협력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단원은 단원간에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, 기량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, 성실한 자세로 각종 공연과 연습에 참석하여야 한다.

제4조(단원의 위촉)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. 다만, 국내·국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5조(단장 및 단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
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단체가 해체되었을 경우
2. 단원으로서 명예 및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
3. 예술단체의 설립 목적에 반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
4. 그 밖에 단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

제6조(임기) ① 단장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는 단원은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(운영위원회 구성 등) ①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거나 서울특별시금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며,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문화·예술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
2. 금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
3. 구청 문화예술업무의 소관 국장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.

⑥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예술단체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향
3. 단장 및 단원 등의 위촉·해촉 등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기본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회의에 참석하는 금천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각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위탁·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,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1조(공연 및 연습) ① 각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,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각 예술단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며,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공연과 연습은 금천구 금나래아트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, 사용료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제1호에 따라 무료로 사용한다.

제12조(경비 등의 지원) ① 구청장은 각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3조에 따른 단원과 객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(제831호, 2015.10.8.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서울특별시 금천구립합창단 운영조례는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 「서울특별시 금천구립합창단 운영조례」에 따라 위촉된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제1223호, 2021.12.31.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시·도유산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□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[시행 2023. 12. 21.] [법률 제19480호, 2023. 6. 20., 일부개정]

제3조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39조(국고보조 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
2. 문화예술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
3.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4.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